

『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어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.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10조)
-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
-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(안 제7조)
-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)
-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 출석 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별첨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및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두는 전부개정안으로,
 - 노사민정협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되나,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 중재 및 갈등해소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 인건비 등 연간 예산 1억원이 소요됨.